수 업 목 적 저 작 물 보 상 금
비 상 대 책 위 원 회

수신자 대학 총장

(경유) 교무처장, 기획처장

제목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관련 보상금 징수 대책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 대학에서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강의 시 종종 타인의 저서나 논문의 일부 등 저작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거나 파일로 전송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면, 대학에서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사 또는 전송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17호'를 통하여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가 매년 학생 1인당 4,190원씩 납부하든지 또는 복사 A4지 1매당 7.7원씩 계산한 금액을 수탁기관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수업에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징수를 목적으로 개별 대학에 협약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학은 저작권이 당연히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이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초·중·고등학교와 구별하여, 대학에 대하여만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징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저작권자이며 동시에 수업담당자인 5만 6천여명의 대학교수들은 본인의 저작물을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제3자가 나서서 보상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으며, 등록금인하 문제로 대학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호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대학으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수탁기관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대학에 대하여 보상금징수를 강행하고자 합니다.

4.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징수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협의를 통하여 이용 주체인 대학교,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보상금의 산출근거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 관한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의 문제점을 교수 및 학생에게 널리 알리고, 무료이용을 위한 입법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6. 아울러 대학과 교수님께서는 2012년 봄학기부터 가능한 한 수업 시에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복사·배포하거나 전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강생에게 교과서를 지정하여 준비하도록 하거나 담당교수 자신의 교재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불가피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범위를 한정하여 학생이 직접 복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복사하는 것은 보상금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 협의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본인의 저작물을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신 교수님의 명단을 전공별로 각 대학에 배포하여 동의하신 분들의 저작물을 수업에 이용하실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 끝으로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서 구성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가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징수 문제에 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개별 대학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의 보상금지급계약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한국원격대학협의회

수업목적 저작물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